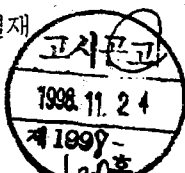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우 100 - 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 전화 (02) 3707 - 9917 / 전송 (02) 3707 - 9929
 처리부서 : 건설행정과(서소문별과 제1동 6층) 과장:김상범 담당사무관:김재용 담당:명대훈

문서번호	건행58150-2660	취급		시 장
시행일자	'98. 11. 24	보존		김상범 11/23
경유	(제1안)	부 시 장		
수신	내부결재	건설국장	"전결"	김재용
참조		건설행정과장	김상범	
		기안	김재용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개정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 따라 육교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업무에 관하여 조례에서 불필요 또는 과다하게 시민을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조례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 예고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기간 : '98. 11. ~ 12.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개정 입법예고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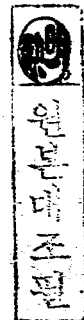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공보관

참조 공보담당관

제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안 : 따로붙임. 끝.

건 설 국 장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 따라 육교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업무에 관하여 조례에서 불필요 또는 과다하게 시민을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육교 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조례 개정에 참고하고자 하니 '98.12. 까지 귀 부서 및 유관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 일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따로붙임 1.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기획담당관, 서관 1 - 4, 서실국 1 - 16, 서본부 1 - 3, 서공 1 - 6

서의과 1-15, 서구 1 - 25(건설관리과장).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 호

입법예고번호	1998. 11. 10	655 호
담당자	법제실장	김부담
상선	이 초범	이 정아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취지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육교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업무에 관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하나의 행사등을 위하여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육교의 수를 각구별로 3개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안 제8조)
- 나. 홍보물설치를 위한 육교의 사용기간을 "14일 이내하되, 1회에 한하여 7일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하던 것을 "행사 홍보물의 경우에는 개첨기간부터 행사종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다. 육교 사용료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의 3호를 적용한 "점용료의 2분의 1"에서 "점용료 상당액"으로 변경 (안 제9조제3항)
- 라. 남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던 것을 육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 12.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3707-9917~8, FAX 3707-9929,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100-74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우 100 - 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전화 (02) 3707 - 8115~6 /전송 (02) 3707 - 8129
처리부서 : 건설행정과(서소문별관 제2동 3층) 담당:명대훈 계장:이준달

문서번호	건행58150 - 1945 ³⁶⁰	선		지			
시행일자	'98. 11. 24	결		시			
경유		접	일자	결	재		
수신	수신처 참조		시간				
참조		수	번호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제목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 따라 육교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업무에 관하여 조례에서 불필요 또는 과도하게 시민을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육교 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조례 개정안 참조하고자 하니 '98. 12. 까지 귀 부서 및 유관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 일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따로붙임 1.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기획담당관, 서관 1 - 4, 서실국 1 - 16, 서본부 F - 3, 서공 1 - 6
서의과 1-15, 서구 1 - 25(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우 100 - 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전화 (02) 3707 - 8115~6 /전송 (02) 3707 - 8129
 처리부서 : 건설행정과(서소문별관 제2동 3층) 담당:명대훈 계장:이준달

문서번호 **건행58150 - 366**
 시행일자 '98. 11. 24
 경유
 수신 공보관
 참조 공보담당관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재		
	시간			공	람
	번호				
수	처리과				
담당자					

제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재 의뢰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안 : 따로붙임. 끝.

건설위원회

명대훈
 조필